

2026년 제19차 충남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직원 공개채용 2차 재공고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7월 2일

충남사회서비스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요 직무내용
장애인지역 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단 (서산)	전담인력	1명	- 시범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홍보 및 정보제공, 자립욕구 조사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등) - 대상자 발굴 및 선정절차 지원(자립신청 접수, 초기상담 및 접수처리, 방문자립 조사 및 결과 보고,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지원, 자립대상자 선정결과 확인 및 자립지원 계획 이행 준비) - 개인별 자립지원(사전 지원 서비스 및 지역 자원 발굴·연계, 퇴소 및 퇴거지원, 주거환경조성,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대상자 모니터링 및 재사정 평가,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재수립, 종결 및 사후관리)

2 근무조건

구 분	채용분야	근무조건	
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시범 사업단 (서산)	전담인력	고용형태	기간제(임용일 ~ 2026.12.31.)
		임용일	2026. 8. 1.(토)
		근무시간	월~금 9시~18시(주5일, 40시간), 휴게시간 1시간 ※ 사업 수행 여건상 근무시간 및 주요 업무 변동될 수 있음
		근 무 지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시범사업단 (충남 서산시 읍지7로 7)
		보 수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사회복지사 4급 5호봉) 적용 / 수당 별도

※ 도, 시·군 위·수탁 사업으로 사업의 종료, 위·수탁 협약이 해지·해제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됨

※ 별도의 수당은 규정에 따라 지급

※ 계약(근로)기간 만료 후 별도 통지 없이 고용관계 소멸

3 응시자격

1. 공통자격

- 기 준 일: 공고일 전일
- 연 령: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임용일 기준 정년(60세)까지 1년 미만 남은 경우 응시 불가
- 성 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거 주 지: 제한없음
- 「충남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공통)
※ 소속시설별 결격사유 별도 적용
- 임용 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2. 분야별 응시 자격기준

구 분	채용분야	자격기준
장애인 지역 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단 (서산)	전담인력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1, 2급 소지자, 특수교사, 상담 전문인력*으로 장애인 자립지원 경력** 1년 이상자 또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자(호봉기준) * 특수교사, 상담 전문인력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4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에 한함(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교육 이수자) * 경력인정 기준: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준수 * 자립지원 경력: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특수교사, 상담 전문 인력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자립주택, 지원주택, 체험홈 등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 경력자

3. 우대사항(가점)

구 분	대 상 자	점 수
지역인재 우 대	• 최종학력(대학원 제외)의 소재지가 충남인 자(예정자 포함) - 단, 대전·세종·충북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제외 • 충청남도 거주자 - 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내에 연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해당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내로 되어 있는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표” 확인 필요 ※ 위장 전입이거나 거주 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임용 취소가 될 수 있음	3점
장 애 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장애인	5점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심사점수(만점)의 5% 또는 10% * 중복불가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지역인재 우대(최종학력, 거주자)는 2가지 중 1개 충족 시 가점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 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어 **채용분야별 4명 이상인 경우만 가산점 부여**함.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해야 함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가산점은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

제출서류		인정기준	제출시기
공 통 (필수)	응시원서	• 온라인 서식 및 자체양식에 의거 제출	서류 전형시
	자기소개서	• 온라인 서식 및 자체양식에 의거 제출	
	개인정보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양식 다운받아 제출 ※ 지원자의 자격증명,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구할 예정이며, 거부 시 응시불가	
	자격증사본	• 자격증(응시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격증, 원본대조필) ※ 공고일 전일까지 최종합격자 발표가 완료된 자격만 인정 ※ 원본 지참	서류 및 면 접 전형시
	경력증명서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 ※ 경력(재직) 증명서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일치하는 경력만 인정 ※ 근무기간, 근무시간, 상근직 여부,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해당자	지역인재	• 졸업증명서(학교명, 주소 표기) ※ 최종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최종 학력*(대학원 제외)의 소재지가 충남인 자(예정자 포함) * 최종학력 기준이므로 충남 소재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더라도 이후 도 이외 소재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음 ** 지역인재는 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학명과는 무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 •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 ※ 주요 인적사항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부 및 정부24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연령, 성별, 출신지역, 학력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노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면접전형 당일 응시자격, 가산점 등을 증빙할 원본 확인(원본과 사본 동시 지참하여 사본 제출 가능). 미제출시 응시 자격, 가산점 등이 인정되지 않음.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서류 추가 될 수 있음.

5 전형 일정 및 기준

1. 채용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채용공고	2026. 7. 2.(목) ~ 7. 12.(일)	본원 홈페이지 등
원서접수	2026. 7. 2.(목) ~ 7. 12.(일) 18:00까지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s://cnpass.fairyhr.com/)
1차 서류전형	2026. 7. 14.(화) 예정	적격여부 등 심사
1차 서류전형 발표	2026. 7. 16.(목)	본원 홈페이지(cn.pass.or.kr)
2차 인적성검사 (온라인)	2026. 7. 18.(토)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별도 안내
3차 면접전형	2026. 7. 21.(화) 예정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3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6. 7. 23.(목)	본원 홈페이지(cn.pass.or.kr)
임용후보자 등록	2026. 7. 28.(화) ~ 7. 29.(수) 16:00까지	
최종합격자 안내	2026. 7. 30.(목)	별도 안내
임용예정일	2026. 8. 1. (토)	

※ 전형별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지 예정

2. 채용전형 단계 및 기준

① 채용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7. 2.(목) ~ 2026. 7. 12.(일) / 11일간
- 접수기간: 2026. 7. 2.(목) ~ 2026. 7. 12.(일) 18:00까지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npass.fairyhr.com/>)

※ 우편, 방문접수 불가하며 온라인 접수마감일에 지원자 폭주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② 1차 서류전형

- 심 사 일: 2026. 7. 14.(화) 예정
- 서류심사위원: 2명
- 심사내용: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기준
 - ▶ 5배수 이하의 경우 적격 여부 심사

구 분	심 사 기 준
자격	• 공고일 전일 기준 자격 등 응시자격 충족한 자
기타사항	• 자기소개서에 비속어 사용하거나 특정 문자만을 반복 기재, 공란의 경우 부적격

- ▶ 5배수 초과인 경우 심사기준에 의해 합격자 선발
 - 총점의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심사 결과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계산) 발생 시 모든 동점자 합격자로 처리

구 분	심 사 기 준
정량평가(40점)	• 자격사항, 교육사항 등
정성평가(60점)	• 응시원서의 충실성, 직무 적합성(직무능력 향상 노력), 발전 가능성 등

※ 전형분야에 따라 평정 요소·점수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2조)

- 유의사항: 서류심사는 지원서에 기재사항으로 심사하고, 추후 면접시험 시 제출된 서류 등의 허위 기재 및 기재 착오 등이 있을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③ 2차 인·적성 검사

- 일 시: 2026. 7. 18.(토) 예정
- 검사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온라인(개별 접속 후 실시)
 - 제출된 응시자 메일 주소로 검사 URL 통보 예정(PC로만 접속 가능)
- 선발인원: 인·적성 검사 응시자(미응시자는 불합격)
 - 인·적성 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인성검사(310문항 45분), 적성(직무능력)검사(55문항 60분)
 - 외부 위탁 업체에서 출제 및 채점
 - 인·적성 검사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④ 3차 면접전형

- 일 시: 2026. 7. 21.(화) 예정
- 면접대상: 인·적성 검사 응시자
- 면접심사위원: 3명
- 면접방법: 면접위원별 질의응답식 심층 면접(구조화 면접으로 경험 및 상황면접)
- 면접장소: 충남사회서비스원 예정(충남 예산군 삼교읍 예화로 10-22, 5층)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계	품행,성실성 및 직업윤리	의사소통력 및 대인관계성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전공 및 실무경력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10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합격기준: 면접위원 합산 점수에 가산점을 더하여 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소수점 둘째자리 절사)
 - 면접시험 결과 동점자 발생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서류전형 고득점자(가산점 제외)
-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 합격자의 임용 결격사유 및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후순위 합격자에 대해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유효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블라인드 채용 준수 ※ 면접 당일 면접관 사전교육 시행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정보제공 금지
 -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금지
- ※ 면접전형 당일 응시자격(필수서류), 가산점 등을 증빙할 원본 제출. 미제출시 응시자격, 가산점 등 미인정 및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⑤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일 시: 2026. 7. 23.(목) 예정
- 등록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병역사항 포함),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및 신체검사서 영수증, 경력증명서(근무시간 포함) 및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해당자), 통장사본(급여), 성범죄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제출
- ※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또는

일반채용신체검사서 제출(공고일 이후 검진분에 한해 인정)

- 필수 포함 항목: 마약류 검사 및 정신질환 유무 진단 결과

※ 채용신체검사서 영수증은 단순 카드결제 영수증이 아닌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영수증 요청

○ 임용등록일: 2026. 7. 28.(화) ~ 7. 29.(수) 16:00까지 / 경영지원팀

※ 접수시간: 평일 09: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등록서류 검토

-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사실확인서)
- 입사지원서와 제출서류 내용 사실 여부 확인
- 채용신체검사서를 통한 건강상태 적합 여부 확인 등

○ 합격취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서, 결격사유,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취소
-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 등 부정이 발견된 경우 불합격 처리함은 물론 합격 및 채용을 입사 후에도 취소

○ 예비합격자 ※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채용인원 1명: 채용인원의 2배수
- 채용인원 2명 이상: 채용인원의 1배수

⑥ 최종 합격자 안내

○ 일 시: 2026. 7. 30.(목) 예정 ※ 개인별 안내

※ 임용 후라도 각종 증명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됨

⑦ 임 용: 2026. 8. 1.(토) 예정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지원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 후에는 수정이나 추가 접수가 불가합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학력, 연령, 출신지, 성별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면접대상자 신원확인용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본 계획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험 7일 전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해야 하며, 추후 제출 자료가 기재 사항과 다르거나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합격을 취소합니다. 임용 후라도 허위사실이나 결격사유가 발견 되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 단계별 합격자, 제출서류 등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누락이나 기재착오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가 제한됩니다.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합니다.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인원이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 내 지원분야를 달리하여 중복지원할 수 없고, 지원시 채용 예정 분야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으며(기제출된 원서는 재공고 시 재작성하여 지원하여야 함), 다시 공고했을 경우에도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류전형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인원에 미달 되거나 적격자가 없어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면접당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증빙(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을 지참하시고 면접시간 15분 전 면접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의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 응시자 본인이 채용서류 반환 신청 가능합니다.
 - 청구방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 이메일(simnary1@cn.pass.or.kr) 제출 시 유선 연락 필수
 - 반환방법 :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수령
 - ※ 응시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구서 상에 지정한 장소로 등기우편 발송(비용 본원 부담) 또는 직접수령
- 채용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simnary1@cn.pass.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내용 확인 후 결과는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 이메일 제출 시 반드시 유선 연락 요망
- 문의사항: 충남사회서비스원 채용담당자(☎ 041-330-2423)

구 분	결격사유
충남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 「충남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1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3.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

구 분	결격사유
	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7.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8.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21.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22.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3.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의 "취업심사대상자"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취업에 대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못한 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

구 분	결격사유
	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②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장애인학대 관련 전문가, 성범죄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

구 분	결격사유
	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⑦ 관할행정기관장은 제6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제6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⑨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⑩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⑪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⑬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36조의2(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장"이라 한다) 및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관할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②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구 분	결격사유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59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장애인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